

「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
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박 정 은

나. 제안이유

- 다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는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을 위탁하여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및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- 본 위탁사업의 기간이 만료('24.12.31.)에 따라, 2회차 사업의 준비단계에 있으며, 사무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무명 :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
-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의2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15조
- 위탁사무 :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 연구·개발 기능 강화
 -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전반(회의, 연구과제, 학술행사 등)
 -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시스템 체계 구축 및 운영
 - 시정 전반에 대한 중앙시책-경북도정과 연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원 강화
 - 사업예산 편성·지출 및 결산보고
 - 정책 관련 리포트(정책 동향·분석 등) 작성* * 정책연구위원회 연계
- 위탁기간 : 수탁일로부터 3년(2025년 ~ 2028년 중)
- 위탁조건
 -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, 구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, 구미시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수탁자 선정방식 : 성과평과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
- 소요예산 : 연간 145,000천원 정도 (시비 100%)
- 성과평과결과 : 탁월(90점)
 -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해온 것으로 평가됨
 -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문시스템 활용 방안 및 정책현장 토론회가 활용 부서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음

○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,
「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의2,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1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‘정책연구위원회’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며,
- 「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」는 2023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의 1회차 민간위탁 사업을 연간 1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증대 방안 토론회 개최, 제1회 지속성장정책포럼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으며,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, 성과평가,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정책연구위원회의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추가 확보 노력과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,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-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 감사결과 제출.
- 또한, 추후 구미시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 및 각종 감사를 거치고 해당 자료를 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